

선교위원회 규정

(제정 2013.5.7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의 설립이념인 기독교 정신을 구현하고자 이에 관한 중요사항을 연구·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선교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·심의한다.

1. 캠퍼스 선교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2. 교직원 및 학생 영성·리더십훈련계획 수립 및 운영에 사항
3. 학생채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
4. 국내·외 선교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
5. 신앙 강좌 및 선교세미나에 관한 사항
6. 기독교 관련 자료 보급에 관한 사항
7. 대학교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
8. 그 밖에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선교봉사처장이 된다. <개정 2014.1.1.>

③ 위원은 선교봉사처장, 선교신학대학원장, 신학과경배찬양학과장, 대학교회 담임목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, 그 밖의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. <개정 2015.3.1.>

④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, 간사는 선교지원실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.

제4조(임기)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(회의)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,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, 가·부 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.

제6조(회의록)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3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4-0-29-2 선교위원회 규정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